

『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3월 11일

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기획국장 배 정 미

나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의 안정적 창업 및 경영활동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자립 주도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의2)
- 이차보전 지원 대상의 확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제1항)
 - 현행 :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이차보전 지원
 - 개정 :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외에 개인 신용대출을 한 소상공인에게도 이차보전 지원

- 이차보전 협약 금융기관 확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제3항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중 우

- 본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이차보전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경영개선자금 대출을 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,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자생력 제고를 돕고,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